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81호, 2024. 2.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6조제3항에 따르면 국제연합(UN)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보다 우대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 제외가 예정되어 있는 네팔, 라오스 및 방글라데시에 대해 특혜관세의 적용시한을 설정하고, 최빈개발도상국 대우가 연장된 앙골라에 대해서는 특혜관세의 적용시한을 삭제하는 한편, 특혜관세의 적용시한이 도래한 부탄을 특혜관세 적용대상 국가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 대통령령 제34281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앙골라에 대한 특혜관세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앙골라에 대한 개정부분은 2024년 2월 12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개발도상국(제2조 관련)

지역	국가
1. 아시아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예멘, 캄보디아
2. 오세아니아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3. 아프리카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남수단,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시에라리온,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차드,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4. 아메리카	아이티

비고

1. 네팔, 라오스 및 방글라데시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6년 11월 23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2. 솔로몬제도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3. 상투메프린시페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4년 1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